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3일, 금천구청장  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3일  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  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2024. 3. 26. 공포 및 2024. 9. 27. 시행)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 대부, 사용·수익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3항 신설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)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 대부, 사용·수익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3항 신설)
- 나)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#### 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대부 등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이 무상 대부,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은 금천구가 공동으로 누려야 되는 재산이기에 그 집행에 있어 공익에 어긋남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